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19
------------	-------

제출년월일 : 2015. 3.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사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별 인적안전망 강화 방안에 따라 동 복지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하던 생활보장위원회의 근거 및 기능 등을 삭제(안 제1조,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 나.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심의·건의 사항 중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3조제1항제5호)
- 다. 동 단위 복지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동 복지협의체의 구성 · 운영 근거를 마련(안 제4조의2)
- 라. 현재 구성하여 운영 중인 동 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동 복지 협의체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규제여부 :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음

4.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15. 2. 12. ~ 2015. 3. 4. (제출된 의견 없음)
- 나.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폐영향 자율평가 결과 : 권고안 수정 반영
 - 평가결과 :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3조제2항 각 호의 의결기능을 수행할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에 따른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필요
 - 조치사항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실질적으로 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사항에 대한 의결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제3조제2항을 삭제
- 다.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5. 3. 12)
-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바.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제1조의3부터 제1조의4까지”를 “제1조의4부터 제1조의5까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합”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및 동 복지협의체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표협의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로,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추천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표협의체는 구”를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며, “행한다”를 “수행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7조의2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4항”을 “제7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조의4제2항”을 “제1조의5제2항”으로, “자중”을 “사람 중”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동 복지협의체 구성 · 운영) ① 구청장은 동 단위 복지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인적안전망 구축을 위해 각 동에 동 복지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동 복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인적 · 물적자원 발굴 및 연계, 지원
2. 긴급 · 위기사례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3.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구에 대한 정기적 방문 및 모니터링
4.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동 복지협의체는 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지역사회 실정에 막고 사회복지 증진과 지역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동 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 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동 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중 “공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 단서 중 “전임위원”을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참석자명단”을 “참석자 명단”으로 한다.

제13조 전단 중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으로, “그 밖에”를 “그 밖의”로 한다.

제17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 복지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동 복지협의체는 이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u>제1조의3부터 제1조의4까지</u>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u>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u>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합 설치·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제1조(목적) ----- ----- -- <u>제1조의4부터 제1조의5까지</u> ----- <u>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및 동 복지협의체를</u> ----- ----- ---. <u><삭 제></u></p>
<p>제3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p>	<p>제3조(기능) ① <u>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u></p>

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
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체 선
정(신규 및 위탁기간 연장
등)에 따른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
한 주요사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령」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③ 대표협의체는 구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 단체 간의
연계 · 협력 업무를 행한다.

④ (생 략)

제4조(구성) ① (생 략)

“대표협의체” 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추천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삭 제>

③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마
포구(이하 “구” 라 한다)-----

-----수행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복지교육국장, 보건소장, 실무 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 ④ (생 략)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 및 보건업무 관련 담당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 · ⑦ (생 략)

<신 설>

② -----
----- 제7조의2제2항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제1조의5제2항 -----
----- 사람
중-----

-----.
-----.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4조의2(동 복지협의체 구성 · 운영) ① 구청장은 동 단위 복지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인적안전망 구축을 위해 각 동에 동 복지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동 복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자원

발굴 및 연계, 지원

2. 긴급·위기사례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3.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

구에 대한 정기적 방문 및 모

니터링

4.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

사업 추진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증

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은 동장과 위촉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동 복지협의체는 동장을 당

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지역

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

진과 지역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

촉한다.

⑤ 동 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

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⑥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 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동
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부터 제3조제4항까지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
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
다.

② · ③ (생략)

제7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 ----- 해당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임기) -----
----- . -----

----- 전

<p>된 위원의 임기는 <u>전임위원</u>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u>임위원 임기</u>-----.</p>
<p>제10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u>1이상</u>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p>	<p>제10조(회의 등) ① ----- ----- ----- <u>1 이상</u>----- -----.</p>
<p>② ~ ④ (생 략)</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p>	<p>제11조(회의록) ① ----- ----- -----.</p>
<p>1. (생 략) 2. 출석위원 및 <u>참석자명단</u> 3. ~ 5. (생 략)</p>	<p>1. (현행과 같음) 2. ----- <u>참석자 명단</u> 3. ~ 5. (현행과 같음)</p>
<p>②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u>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u>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u>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u>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p>	<p>제13조(의견의 청취) ----- ----- <u>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u>----- ----- --- <u>그 밖의</u> ----- -----.</p>

<p>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17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u>운영</u>에 <u>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p> <p>제17조(운영규칙) ----- ----- <u>운영에</u>-- ---- ----- - .</p>
---	---